

# 통합 협동조합중앙회 정관(안) 확정

통합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위원장 : 鄭世煜 명지대교수, 金東根 농림부 차관)는 3월4일(토) 제9차 회의에서 통합중앙회 정관(안)을 의결하였다.

△회장 1인, 사업전담대표이사 3인, 금융·경제·지도사업 등의 외부 전문가 7인, 지역농협 조합장 10인, 지역축협 조합장 3인, 품목조합 조합장 7인으로 하되, 품목조합의 조합장은 농업계 3인, 축산계 3인, 인삼계 1인으로 하였다.

## 이사회 구성내역

회장	사업전담 대표이사	외부전문가 이사	회원 조합장 이사					계
			지역 조합		품목 조합			
			지역농협	지역축협	전문농협	업종축협	인삼조합	
1	3	7	10	3	3	3	1	20

이번에 의결된 통합중앙회 정관(안)에는 통합중앙회의 대의원회·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축산경제부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등 농·축·삼협중앙회의 주요 쟁점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원조합수와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총 30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 조합별 대의원회 구성내역

총 계	지역 조합			품목 조합			총 계	
	지역농협	지역축협	계	전문농협	업종축협	인삼조합		계
조합 수	1,132	146	1,278	45	46	14	105	1,382
대의원 수	224	48	272	15	15	7	37	309

△지역농협은 시·군당 1인을 선출하도록 하되, 지역 농협수가 8개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1인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품목조합과 지역축협은 3개조합당 1인을, 인삼조합은 도별 1인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중앙회의 이사회는 총 31인의 이사로 구성하였다.

△통합중앙회의 이사회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회원조합의 권익대변 및 품목조합장이사가 회원조합 전체 이사수의 1/3이상 되도록 규정된 새 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중양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는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협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새 협동조합법의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특례에 따라 축산경제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축산경제조합장 대표자회의는 지역축협 및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 45인 이상 55인 이하로 구성하되, 축산계 품목조합의 조합장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인삼조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삼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집행간부는 인삼계 품목조합의 조합장들이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농업경제 대표이사가 제청한 자를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정세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해 9월 10일 설립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5차례에 걸친 토의를 거쳐 통합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4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중앙회 정관안도 확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 정관(안)은 대의원회와 이사회 구성 등 많은 쟁점이 있었으나 각각 4차례의 설립기획단 회의와 설립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의 도출함에 따라,

지난 해 9월7일 공포된 통합협동조합법이 설립위원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중앙회 정관(안)이 마무리되어 통합중앙회 설립 작업에 중요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세욱 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10일 제10차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선거규약(안)과 대의원

및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선거규약(안)을 정하고, 이번에 의결된 정관(안)과 함께 늦어도 4월 중순에 창립총회의 의결과 금감위 협의를 거쳐, 농림부장관 인가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조합 정관(예), 통합중앙회의 조직·인사·급여 등 세부규정(안)들을 마련하여 금년 7월1일 통합중앙회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0/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설립위원회>

## 고속도로 운행 봉군이동차량, 화물적재 안전대책 철저강구 바랍니다 봉군이동차량서 떨어진 벌통뚜껑 등이 문제 발단, 별도 고무바 준비 바람직 양봉농가 불편해소 위해 민원공문사본 4월7일 양봉의날 행사장서 일제배포

지난 1월21일 본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 파주군 최영세 회원이 다음과 같은 글을 실어 알려왔다.

“저는 이동양봉을 하며 파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월이면 벌교로 봄벌을 키워볼까 하며 처음 이동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속도로에서 벌통을 차량에 싣고 운행중(포장을 씌우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제재를 받았다는 분이 생겨서 그것도 1회 운행중 3번이나 검문 당하고 사정사정해서 통과했는데 앞으로 벌통의 이동중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고 협회보에 실어 주시면 여러 봉우들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고속도로 편의상 짐을 실은 모든 차량에 포장을 씌워야 한는데 벌통은 생물인데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40-1호 최영세, 전화: 011-9036-8499)

이 같이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에 강경 단속에 나선 것은 고속도로 운행 차량에서 적재화물을 흘려 뒤따르는 다른 차량에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빈발 건수가 벌통적재 화물의 벌통뚜껑류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당국은 이를 근절키 위해 도로교

통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시로 고속도로 진입차량 중 적재화물의 안전도를 철저히 점검하는 일괄 행정지시로 3월까지 개몽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강경단속에서 봉군이동차량이 주범으로 몰려 표적대상이 되고 있는 데 당국의 말은 전국 고속도로 진입 차량에 강경 단속을 실시한 후로 화물 유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 단계서 양봉농가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양봉농가들 스스로 화물차에 봉군을 적재할 때에는 전보다 훨씬 각별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서 봉군을 이동해야 하겠지만, 본협회 역시 양봉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과 행정협조 협의의 중이며 오는 4월7일 양봉의날 행사장에서 그 결과를 민원서류 복사본을 일제히 배부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5. 1.5)